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성주군 작은영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시설 현황

1) 위　　치: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5-4(창의문화교류센터 3층)

2) 규　　모: 지상 3층, 95석(1관 48석, 2관 47석)

(단위: ㎡)

연면적	상영관		사무실	매표소 및 매점	화장실 외	비고
	1관 (48석)	2관 (47석)				
552.55	126	124.5	15.05	216.79	70.21	개관 2022.7.
주요 장비	영사시스템, 스크린, 음향시스템, 관람석 등		컴퓨터, 책상, 의자, 등	발권기, 냉장고, 팝콘기, POS기, 프린터기 등	휴게용 의자, 탁자, 휴지통, 유아 기저귀 교환대 등	

나. 주요업무 내용

1) 작은영화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

2) 그 밖에 “위탁자”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다. 위탁내용

1) 위탁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(1회 연장 가능, 최대 6년)

2) 위탁방법: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

3) 위탁사무: 영화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등

4) 주요요건

가) 영화관 운영계획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군의 승인 득해야 함

나)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경비로 충당 원칙

다) 영화관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(성주군민 우선 채용)

라) 영화 상영작은 전국 동시 개봉영화

마) 영화관 시설 및 장비의 유지·보수,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

바) 영화관 운영에 따른 수입·지출의 정기 보고

4. 수탁자 선정

가. 선정방법: 공개모집

나. 신청자격: 위탁운영 모집공고일 현재 “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다. 선정방법: 선정위원회(6~9명)를 구성하여 정량·정성평가

라. 선정기준

1) 정량기준: 전문 인력보유 및 경력, 영화관 운영실적, 자기자본 등

2) 정성기준: 영화관 운영·관리 계획 제안서 평가 등

3) 지역사회와의 연대 가능성

마. 근거규정: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및 제6조(수탁기관 선정)

5. 향후 추진계획

가.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계획 수립	: 2022. 3. 24.
나. 위탁운영 모집 공고	: 2022. 4. ~ 5.
다.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	: 2022. 5.
라. 작은영화관 준공 및 개관	: 2022. 7.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운영 및 지원)

2)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3)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4)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5)「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2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
6)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, 제6조(수탁기관 선정), 제7조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)

7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

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5-4번지, 창의교류문화센터 3층에 건립중인 95석 규모의 작은영화관을 영화상영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영화서비스에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작은영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